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근거 마련〉
■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8925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	---

1.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 마련 등	2
--	---

I. 개요

1. 강선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892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선우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3. 13.

(3) 회 부 일 : 2025. 3. 14.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국민의 건강 및 안전한 식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기존 전문성 있는 교육 실시기관을 위탁 지정기관으로 명기하여 집단급식소 위생수준 향상 및 교육의 질 제고가 필요함.

또한 교육기관의 시정명령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6조의2 신설).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영양사협회,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를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5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	제56조(교육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조리사와 영양사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

현행	개정안
<u>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u>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u>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민영양관리법」 제22조에 따른 <u>대한영양사협회</u>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u>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u> ③ 제2항에 따른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는 지정된 내용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전문교육기관은 전문교육 관련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교육기관이 제5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내용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지정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6조의2(전문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6조제3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56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고의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 처리를 한 경우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 조치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영양사 및 조리사 전문교육기관은 제56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봄.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56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38조²⁾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참고로, 2008년 8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79호) 제19조의³⁾

1) 「식품위생법」

제56조(교육)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에게 교육(조리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영양사는 1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자·실시기관·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 「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73호, 2025.1.3. 시행)

제38조(교육의 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및 교육시간 등 교육실시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에 따라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와 (사)대한영양사협회에 각각 위탁하였고,

2013년 3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식약처로 이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교육기관별 교육대상 등 >

교육기관명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방법	교육비	교육기관 지정년도
(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집단급식소 종사 조리사	6시간	집합 또는 온라인	35,000원	2008
(사)대한영양사협회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	6시간	집합(3)+온라인(3) 또는 온라인(6시간)	35,000원	2008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그런데,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실시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조리사 및 영양사 교육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제2조에서는 ‘교육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실시기관에서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기관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영양관리법」 제22조⁴⁾에 따른 대한영양사협회, 「민법」 제32조⁵⁾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

3) 「식품위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679호, 2008.2.29. 시행)

제19조의2 (교육의 위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및 교육시간 등 교육실시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국민영양관리법」

제22조(영양사협회) ① 영양사는 영양에 관한 연구, 영양사의 윤리 확립 및 영양사의 권익증진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양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를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이 보다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국민의 식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조리사에 대한 교육은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가,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대한영양사협회가 독점적으로 실시하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안 제56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조리사 또는 영양사는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56조의2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문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청문을 하도록 현행법 제81조⁵⁾에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참고로,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와 관련하여서는 장종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231호)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바,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 관련 비교 >

구분	현행법	장종태의원안 (제6715호)	강선우의원안 (제8925호)
지정주체	식약처장	식약처장	식약처장
교육기관	총리령에 위임 - 식약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 실시	법률에 규정 - 식약처장은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법률에 규정 - 대한영양사협회 -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지정기준 및 절차	-	시설·인력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식약처장에게 신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식약처장에게 신청
준수사항	-	교육시간 준수, 교육 관련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교육 관련 자료의 보관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교육기관 평가	-	인력·시설·설비 보유 현황 및 활용도, 교육과정 운영실태 및 교육서비스의 적절성·충실성 등을 평가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
지정취소	-	법률에 규정	법률에 규정
청문	-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

6) 「식품위생법」

제81조(청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삭제 <2015. 2. 3.>

1의2. 삭제 <2013. 7. 30.>

1의3. 제7조제5항·제9조제5항·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인정의 취소 또는 제18조제7항에 따른 안전성 승인의 취소

2.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취소

2의2.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3.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나 영업소의 폐쇄명령

4. 제80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영양사 및 조리사 교육의 독과점 방지와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에 비영리법인 등의 추가가 필요하며, 위법시 지정 취소 등의 규정이 필요함.

□ (사)대한영양사협회:

- 영양사는 국민의 건강,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전문가로서 국민 건강증진 및 안전한 식생활 확보를 위하여 기존 전문성 있는 조리사·영양사 교육 실시기관을 위탁 지정기관으로 법률에 직접 명기하여 교육의 질 제고와 식품위생 수준 및 자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에 찬성함.
- 다만, 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위반 사항을 시정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양사, 조리사 전문교육기관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사)한국외식산업협회:

- 안 제56조제2항의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함에 있어, 대한영양사협회,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뿐 아니라 식품위생을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도 추가되어야 형평성 및 공정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사)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 조리사 및 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식품위생을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업종별 비영리법인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3